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고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 7. 12.

예천군의회의장



1. 개정이유

-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위탁사무,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수탁기관의무 등에 대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및 민간위탁 사무(안 제4조 및 안 제5조)
- 나.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제7조 및 제8조)
- 다.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안 제10조 ~ 안 제14조)
- 라. 계약 체결 및 위탁계약의 해지 등(안 제16조 및 안 제18조)
- 마. 수탁기관의 의무(안 제17조)

바. 지도감독 및 평가(안 제21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결과 :

바.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주 소 : 예천군의회 (우 36826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 (☎054- 650- 6407, FAX 054- 650- 6409)
- 전자우편(이 메 일) : syyh2000@korea.kr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예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위탁사무를 수탁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는 예천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

제5조(민간위탁 사무) ①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 등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예술·영상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4. 체육·주민편익시설 관련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교통 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근로자복지·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그 밖에 제4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6조(의회 동의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하기 전에 위임사무의 경우에는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연간 3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2. 제1호의 위탁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필요한 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경비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기타 연간 위탁료 3천만원 미만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능력
3. 민간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5. 사업운영 투명성 등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수탁기관 선정은 제7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 ③ 공개모집에 따른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 ④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를 따른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사무 별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심사
2. 그 밖에 군수가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관계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한다.

1. 예천군의회 의원
2.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계 공무원 등

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연관된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전과 관련된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5조(자료 제출 요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의 당사자 및 관계 기관 등에 수탁기관 선정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계약 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공증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민간위탁 기간 및 비용

3. 민간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 위탁기간이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및 실적 등 위탁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군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연간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7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고 민간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부당한 비용 등의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7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게 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비용 지원) 군수는 민간위탁사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사무처리지침 등) 군수는 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하고 민간위탁 사무처리지침을 전달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감독 및 평가)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때에는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③ 군수는 지도·감독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관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재위탁이나 재계약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이의신청) 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대한 답변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군수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한 때에는 해당 이의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3항에 따른 통지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①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보다 나은 권익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 청렴 국가 구현을 위한 부패방지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하여,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개선하는 부패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8년도 추진 과제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대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권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개선권고(안)에 대한 귀 기관의 **의견 제출** 및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대한 **확인사항**을 요청하오니, **2018. 9. 2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확인사항(붙임3)의 경우, 개선권고 후 이행 점검 등과 관련되므로 반드시 제출
 - ※ 개선권고(안)에 대한 의견(붙임2)은 수정대안 등이 있을 경우에 제출하여 주시고 기간 내 회신이 없는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 붙임 1.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 1부.
2. 의견조회 양식 1부.
3. 지자체별 민간위탁 기본조례 확인사항 서식 1부. 끝.

국민권익위원회	
수신자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조사관	부패영향분석과장
이진희	김민종
협조자	
시행	부패영향분석과-2572 (2018. 9. 7.) 접수 기획감사실-11305 (2018. 9. 9.)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국 / www.acrc.go.kr
전화번호	044-200-7655 팩스번호 044-200-7941 / jinsange@acrc.go.kr / 비공개(5)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지자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부패유발요인(문제점)		개선방안
위탁준비	1.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부실 1-1 관리·운영의 투명성 등 위탁기준 부재에 따른 사전 적정성 검토 부실 1-2 민간의탁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 견제 기능 미흡	1.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1-1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1-2 지방의회 동의 내용 구체화
	⇒	
위탁진행	2.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문제 발생 2-1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배점 등 공개 규정 부재에 따른 투명성 문제 2-2 이해관계인의 선정과정 참여에 따른 선정절차의 불공정 문제 2-3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부재	2.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2-1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배점 등 사전공개 2-2 수탁자 선정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2-3 선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 마련
	⇒	
위탁이후	3. 민간위탁 사무의 사후 관리·감독 미흡 3-1 사업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 부재 3-2 재계약 적정여부 판단 절차 부실 3-2 구체적인 제재규정 미흡으로 수탁기관의 책임성 확보 곤란	3.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 강화 3-1 사후 성과평가 실시 의무화 3-2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및 지방의회 동의 의무화 3-3 수탁자의 위탁 관련 중대 위법 행위 등을 위탁 취소사유로 명시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

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입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입 및 수탁기관
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